제90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청정수소의 인증요건 및 인증취소 등(신설) ㅇ (청정수소의 인증기준)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기준으로 인증등급을 5등급 이내로 구분하며, 세부기준은 산업부 장관이 고시 ㅇ (청정수소의 인증절차) 인증신청, 인증서 발급, 인증비용 부담 등의 인증절차 규정 ㅇ (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 등)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의무 부과 ㅇ (인증의 취소) 인증 취소시 예고통보 및 소명기회 제공 ㅇ (청정수소의 인증유지 점검) 사업자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ㅇ (생산·수입·판매 등의 신고) 청정수소 생산·수입·판매자는 매분기별 고시에 정한 신고내용·방법·절차에 따라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 ▶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, 제34조의10, 제34조의11, 제34조의13, 제34조의14, 제34조의15, 제34조의16 2.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기관의 의무(신설) ㅇ (인증기관의 지정 등)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지정대상·기준, 인증기관의 종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(비밀유지의무) 청정수소 인증기관 임직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 · 누설 금지 ▶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7, 제34조의18	
2	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청정수소의 인증요건 및 인증취소 등(신설) ○ (청정수소 인증의 표시)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를 생산, 수입,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– 인증의 도안과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▶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, 제9조의5 2.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기관의 의무(신설) ○ (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) 인증기관에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 ▶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갱신(신설)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사항 중 소속시장, 사업장 주소, 사업자번호(고유번호)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하도록 함 ㅇ 기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하여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▶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, 제9조의17	1.비중요
4	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한 연장 및 품목 코드 정비(신설) ㅇ 유통이력수입수산물 21개 모든 품목의 지정기간을 3년 연장 - (기존) 23.2.28~23.7.31 → (연장) 23.8.1.~26.7.31. ㅇ 22년 HS 코드 개정으로 성형가리비관자 · 냉동성형 가리비관자를 기존 가리비 품목에서 추출하여 새로운 품목번호(0309.90-2000)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유통이력 신고 대상 코드에 추가하여 관리 ▶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	1.비중요
5	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시공단계 점검 강화(강화) ㅇ 시공 후 1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(슬래브 시공 전후, 완충재 시공 후, 바닥구조 시공 후)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단계 점검 강화 ▶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7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 · 규격(신설) ㅇ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,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,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규격, 제조·가공기준 신설 ▶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. 11-1, 제5. 11-3 2.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신설) ㅇ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, 제조·가공기준, 규격 신설 ▶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. 3. 3.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(신설) ㅇ 채종유(유채유 또는 카놀라유)는 최종제품의 에루스산 함량이 2% 이하가 되도록 제조 ▶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제5. 7-1 3) 4.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(신설) ㅇ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(0.35 mg/kg 이하) ▶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.3.5)(2) 5.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(강화) ㅇ 식품중 농약 잔류허용기준(쌀 중 사이퍼메트린 0.3†) ▶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변경 등(신설) ㅇ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, 절차 – 시설기준(25개 부문), 장비기준(10종), 인력기준(전문의, 간호사, 수어통역사 등),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– 지정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복지부장관등에게 신청하고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ㅇ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변경 신고 및 변경 신청 절차 – 명칭, 소재지, 개설자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며, 지정기준과 관련된 시설, 장비,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▶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2.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정비(강화) ㅇ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 및 장비기준 신설 – (탈의실) 검진 경로상에 설치, 휠체어 유효폭 및 회전공간 확보, 평상 등 비치, 사생활 보호를 위한 커튼 등 설치, 바닥은 단차 제거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사용,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을 장애인 등 편의법의 세부기준에 맞게 설치, 장애인이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 설치, 비상경보 설비와 비상호출장치 설치 등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- (장비) X-ray, 유방촬영기기, 산부인과 진료대,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좌우 회전·이동이 가능해야 하며, 휠체어의 이동과 회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, 휠체어 체중계, 장애특화 신장계, 특수휠체어 등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함 ▶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	
8	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 휴가 및 단축근무 실시 의무(강화) ㅇ (배우자 출산휴가) 분할사용횟수를 3회로 확대 ㅇ (난임치료휴가) 기간을 연간 3일(1일 유급)에서 연간 6일(2일 유급)으로 확대 ㅇ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연령)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ㅇ (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기간)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미사용 기간(1년-사용한 육아휴직 기간)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확대 (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→ 최대 36개월까지 확대) ▶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9조의2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근로기준법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 임산부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(강화) ○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는 기간을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 (기존 12주 이내, 36주 이후) ▶근로기준법 제74조	1.중요